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11- 57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연 및 간접흡연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의 방법을 구보에 고시, 금연구역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금연구역내 흡연구역 지정장소는 안내판 또는 표시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 (안 제8조, 제9조)

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안 제12조)

바. 시행일은 2012년1월1일로 함. (부칙)

3. 제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1. 7. 28 ~ 8. 17

■ 제출의견 : 1건(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별지2 양식)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 원안동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8. 18) : 원안의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조례 안 1부.

서울시 마포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사단법인 한국담배소 비자 협회	<p>○ 제8조 (금연구역 표시 등)</p> <p>▷ 금연구역 뿐만아니라 <u>흡연공간 (구역)을 지정 운영해줄 것을 제안</u></p> <p>→ 제한적이거나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방안 요청</p>	<p>○ 반영</p> <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이미 흡연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이 있으나 구에서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의 흡연구역설치 운영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항을 둠</p> <p>⇒(제9조 흡연구역 설치 등) 신설</p>
	<p>▷ 흡연공간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스모킹맵」 설치운영</p>	<p>○ 미반영</p> <p>- 조례 제8조에 의해 안내판 등은 규칙으로 제정 명시함</p>
	<p>○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p> <p>▷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준법감시단의 발족 제안</p>	<p>○ 미반영</p> <p>- 이미 조례안 제11조에 자원봉사자(단체포함)활용하여 금연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시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6조제1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부터 시행한다.